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서보영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6.(월) ~ 11. 10.(금)

2. 제정이유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,
- 나. 「헌법」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(UN)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31조를 준수하고,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마련함.
(안 제7조 및 제8조)

4. 검토의견

-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정당한 휴식권을 포함한 놀 권리(游乐权)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놀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¹⁾.
-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²⁾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, 「헌법」 제6조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, 이를 명시한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제6항을 이 조례안의 제정 근거로 두고 있음.
- 아동의 놀 권리가 소극적으로는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놀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, 이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줄 때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, 「헌법」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³⁾ 놀 권리(游乐权)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볼 수 있음.
- 또한 「헌법」에 명문(明文)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, 기본권 보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은 아동의 행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두 기본권의 충돌은 아동의 보호와 올바른 인격 발현이라는 목적성 하에 해석되어야 함.⁴⁾

1)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경상남도, 경상북도, 전라남도, 전라북도,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7개 기초자치단체(대구 수성구 포함)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음.

2)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제31조

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.

3) 헌법재판소 1991. 6. 3 선고 89헌마204 결정, 헌법재판소 2012. 11. 29 선거 2011헌마827 결정 등

4) 98헌가16-98헌마429(병합) 결정. 헌법재판소 2009. 10. 29. 선고 2008헌마454 결정

- 또한 2021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국제아동삶의질조사(ISCWeB)에 따르면 핀란드, 프랑스, 독일 등 35개국의 만10세(초등학교 5학년, 2019년)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31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3년 5월 4일 발표한 '2023 아동행복지수'에 따르면 조사자의 86.9%인 1,940명의 행복지수가 '하'로 1년 전보다 2.5%p 증가하여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아동은 어릴 적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경험을 바탕으로, 성장해 올바른 사회관계를 맺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된다는 점과 아동의 행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'놀 권리'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,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아동복지”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- 3.~11. <생략>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~⑤ <생략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

제31조 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□ 헌법

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·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
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